

# 2025년도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발간사

## I. 개관

제1절 도입배경

제2절 주요 추진연혁

제3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 II. 조직구성 및 위원회 운영

제1절 조직 및 구성

제2절 위원회 운영

## III. 활동 및 홍보현황

제1절 시 홈페이지

제2절 위촉식

제3절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위원회 활동

제4절 홍보현황

## IV. 고충민원 처리 현황

제1절 고충민원 처리 현황

제2절 위원회 심의·결정 사례

## 부록

1. 고충민원 처리현황(민원처리 상세내역)
2.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발간사

2025년 6월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출범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과,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든 구리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 구조와 그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토대로 구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5년 6월 12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랜 기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던 민원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복합 민원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면담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아직 출범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고민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도와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재길

# **I . 개관**

## 1. 도입 배경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권익 보호 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설립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행정 역할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시 및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다변화되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기존 행정제도만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전문적 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체계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각종 갈등 상황을 조기에 조정·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리 시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공감대 속에서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고자 2025년 6월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 2. 주요 연혁

- ( '24.02.29.)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컨설팅(도입 계기)
- ( '24.06.14.)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검토 보고
- ( '24.06.20.)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방침보고
- ( '24.07.16.)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보고
- ( '24.07.16.)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24.08.19.)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원안 가결' )
- ( '24.09.09.)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의결
- ( '24.09.27.)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공포
- ( '25.01.16.)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위촉) 운영
- ( '25.03.2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위원회 6인 추천
- ( '25.04.08.)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회보고
- ( '25.04.11.)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회 제출
- ( '25.04.23.)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회의결
- ( '25.05.16.)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이재길 등 3명)
- ( '25.06. ~ ) 제1기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 3. 시민고충처리위원 현황(2025.12.31. 기준)

|   |                                                                                   |         |                               |
|---|-----------------------------------------------------------------------------------|---------|-------------------------------|
| 1 |  | 직 위     | 위원장                           |
|   |                                                                                   | 주 요 경 력 | 행정사<br>전)법무법인 한사명 사무장         |
|   |                                                                                   | 임 기     | 2025-5.16.~2029.5.15.<br>(4년) |
|   | 이재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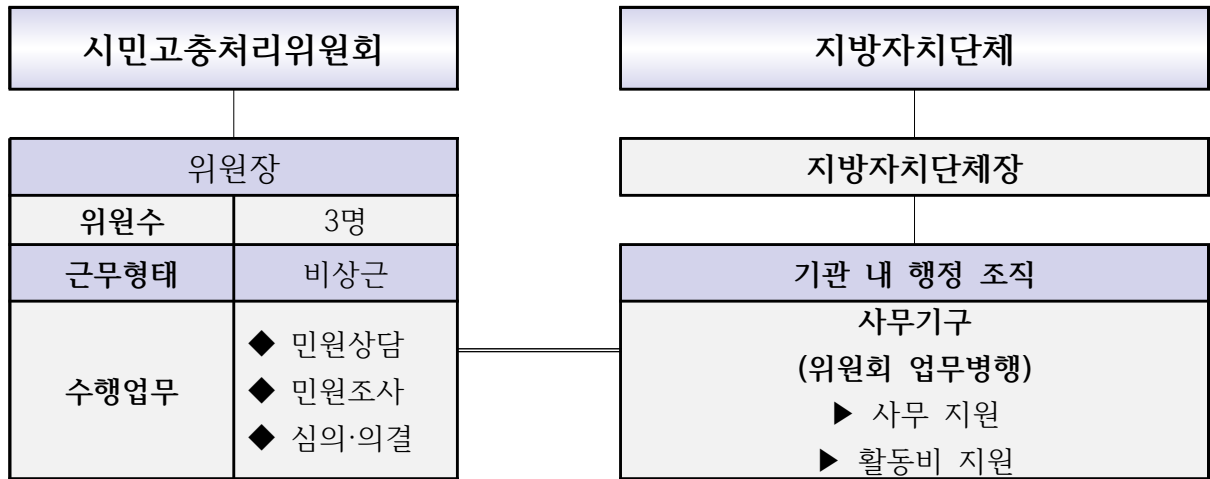
|   |                                                                                    |         |                                        |
|---|------------------------------------------------------------------------------------|---------|----------------------------------------|
| 2 |  | 직 위     | 부위원장                                   |
|   |                                                                                    | 주 요 경 력 | 신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br>전)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
|   |                                                                                    | 임 기     | 2025-5.16.~2029.5.15.<br>(4년)          |
|   | 권오근                                                                                |         |                                        |

|   |                                                                                     |         |                                   |
|---|-------------------------------------------------------------------------------------|---------|-----------------------------------|
| 3 |  | 직 위     | 위원                                |
|   |                                                                                     | 주 요 경 력 | 법무법인 승우 대표변호사<br>전)법률사무소 승우 대표변호사 |
|   |                                                                                     | 임 기     | 2025-5.16.~2029.5.15.<br>(4년)     |
|   | 신준우                                                                                 |         |                                   |

## **II. 조직 구성 및 운영**

# 1. 조직 및 구성

## 가. 조직(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병행형)



| 구분        | 총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    | 사무 기구 |     |    |     |
|-----------|----|-----------|-----|----|-------|-----|----|-----|
|           |    | 소계        | 위원장 | 위원 | 소계    | 담당관 | 팀장 | 주무관 |
| 현원<br>(명) | 6  | 3         | 1   | 2  | 3     | 1   | 1  | 1   |

##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1) 자격요건

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 및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임용된 자는 제외

\*\*\*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2) 결격사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5조(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7조(겸직금지)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 1) 행정의 인간화 기능

일반시민은 행정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접근하더라도 행정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축소·완화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행정과의 관계를 중재함으로써 시민이 행정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고, 행정 전반을 보다 인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통한 행정통제 기능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통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충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규칙·법령의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집행 및 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3)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능**

고충민원의 개별적 처리를 넘어, 시민의 보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기능한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시정해 나가며, 행정행위의 적정성과 건전성에 관한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조언을 제공한다.

행정기관이 당면한 현안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원을 수행한다.

### **4) 합의·조정을 통한 사법구제 제도 한계 보완 기능**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결과 행정과 시민 간에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형성될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합의·조정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중간적·완충적 역할을 수행한다.

### **5) 행정개혁의 역할 수행**

행정은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결정을 선례로 삼아 지속하려는 관성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 스스로 이를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관성을 극복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6) 행정의 공개성을 확대하는 기능

행정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행정의 공개성을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은 문제된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2. 운영

### 가. 고충민원의 정의

부패방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된다.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나. 고충민원의 신청 방법

1) 접 수 처 : 구리시 감사담당관 조사팀

※ (우11954)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본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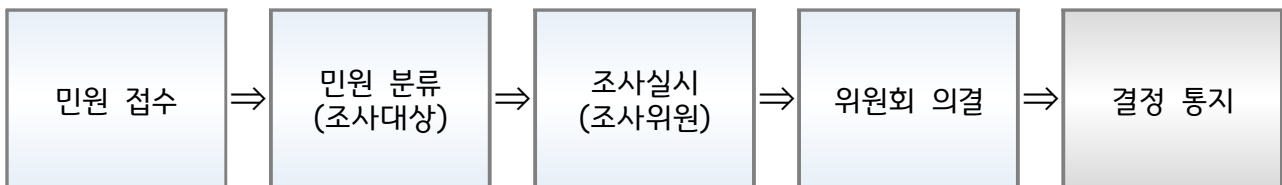
2) 상담전화 : 031-550-8377, 8376

3) 접수경로 : 방문, 우편, 팩스(031-550-8762), 전자메일 등

4) 신청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 대표자 선정(변경)서,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 다.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처리 절차(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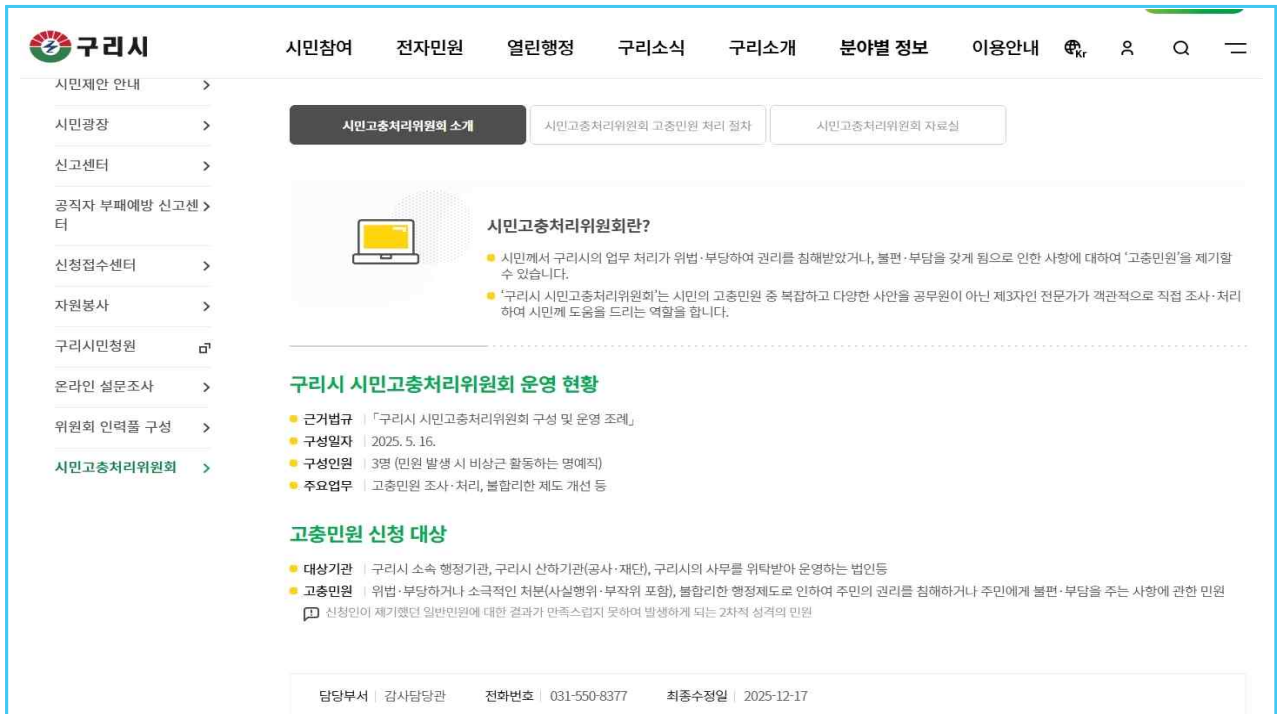


처리기간 : 60근무일 이내(연장 가능)

| 절차(내용)          |            | 비고*    |
|-----------------|------------|--------|
| 1) 민원 상담·접수     |            | (D+1)  |
| ▪ 방문/우편/팩스      |            |        |
| 2) 민원 분류        | 조사 미 실시    | (D+7)  |
| ▪ 처리방침(조사대상) 결정 | ▪ 이송,각하,종결 |        |
| 3) 조사 대상 자료 수집  |            |        |
| ▪ 설명자료 요청       |            |        |
| ▪ 민원 경과, 쟁점 등   |            |        |
| 4) 위원회 회의 개최    | (사후보고)     | (D+16) |
| ▪ 조사대상 확정 및     |            |        |
| 5) 조사 실시        |            |        |
| ▪ 서면조사(추가자료)    |            |        |
| ▪ 실지/출석조사       |            |        |
| 6)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        |
| ▪ 조사위원 작성       |            |        |
| ▪ 결정구분(7종)      |            |        |
| 7) 위원회 의결       |            | (D+41) |
| ▪ 조사결과 보고 청취    |            |        |
| ▪ 안전 심의·의결 / 보고 |            |        |
| 8) 결정 통지        |            | (D+43) |
| ▪ 민원 처리결과 통지    |            |        |
|                 | (기간 연장 시)  |        |
|                 | 7) 위원회 의결  | (D+60) |
|                 | ▪ 조사결과 보고  |        |
|                 | ▪ 안전 심의·의결 |        |
|                 | 8) 결정 통지   | (D+62) |
|                 | ▪ 처리결과 통지  |        |

### **III. 활동 및 홍보 현황**

# 1. 시 홈페이지



## 2. 위촉식(2025.5.16.)



### 3.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위원회 활동

| 구분  | 일자          | 회의 내용                                                                                                               | 비고 |
|-----|-------------|---------------------------------------------------------------------------------------------------------------------|----|
| 정례회 | 2025.06.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선출</li> <li>▪ 202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li> <li>▪ 민원 처리방침 의결</li> </ul> |    |
| 정례회 | 2025.07.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고충민원 접수건 처리 방침 토의</li> </ul>                                            |    |
| 정례회 | 2025.10.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고충민원 접수건 심의 및 의결</li> </ul>                                             |    |
| 정례회 | 2025.09.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민원 접수건 관련 토의심의 등</li> </ul>                                              |    |
| 정례회 | 2025.11.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접수 건 보고</li> <li>▪ 2025년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관련 토의</li> </ul>                   |    |
| 정례회 | 2025.1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관련 토의</li> </ul>                                         |    |
| 임시회 | 2025.0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고충민원 접수건 신청인 의견청취</li> <li>▪ 1호 고충민원 위원회 심의 의결</li> </ul>               |    |
| 임시회 | 2025.08.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 고충민원 접수 건 쟁점사항 토의</li> </ul>                                            |    |

### 4. 제도홍보 현황

#### 가. 보도자료 배포

- ( '25.01.21.)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본궤도에 오른다」
- ( '25.02.10.)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실시」
- ( '25.05.19.)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
- ( '25.06.12.) 「고충민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풀어 가세요!」

#### 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안내

- ( '25.06.16.)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협조 알림」
- ( '25.09.09.)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협조 재알림」

## **Ⅳ. 고충민원 처리결과**

#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 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 현황

| 조사 건수 |    |    | 처리 완료 내역 |    |    |          |          |          |          |            |
|-------|----|----|----------|----|----|----------|----------|----------|----------|------------|
| 계     | 완료 | 진행 | 계        | 취하 | 기각 | 시정<br>권고 | 의견<br>표명 | 개선<br>권고 | 기관<br>이송 | 합의<br>(조정) |
| 4     | 4  | -  | 4        | -  | 1  | -        | 1        | -        | 2        | -          |

※ 기준일 : 2025.12.31.

## 나. 사무국 처리 현황

| 총계  | 접수 민원 |     |    |    |    | 상담 민원 |    |    |
|-----|-------|-----|----|----|----|-------|----|----|
|     | 계     | 답변  | 이첩 | 각하 | 진행 | 계     | 안내 | 종결 |
| 207 | 207   | 204 | -  | -  | 3  | -     | -  | -  |

※ 기준일 : 2025.12.31.

## 다. 민원 처리 상세 내역(부록 참조)

## 2. 위원회 심의·결정 사례

### 가. 도시정비법 답변 이의

#### 1) 피신청인 구리시장(○○과)

#### 2)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25. 6. 4.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등을 근거로 ▲▲지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지구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이 아니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답변에 이의가 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3) 사실관계

▲▲지구는 제2001-\*\*\*호 건설교통부 고시로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된 이후, 제2006-\*\*\*\*\*호 경기도 고시를 통해 구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이다. 신청인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승인받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무효로 확정되면서, 이후 다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 4) 사안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승

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⑦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 나) 판단 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지구가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에 있다.

신청인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미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신청인은, 추진위원회 구성은 향후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은 ▲▲지구가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신청인이 제안한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당 규정을 개정한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는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지역 여건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인가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도시 기능이 쇠퇴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의 회복 및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5)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결론이 지자체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단지 동대표 회장 선출 관련

#### 1) 피신청인 구리시장(○○과)

#### 2) 신청 원인

신청인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입주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개표 과정에서 당선인이 입후보 시 제출한 신청서의 직업란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시 소관부서(건축과)에 문의한 후 직업란을 수정하여 당선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낙선거 등을 중심으로 민원이 본격화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당선 취소 및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공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 3) 사실관계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유지 여부 검토 등 선거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단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회장 후보로 A, B, 감사 후보로 C, D를 각각 공고하였다. 이 중 회장 후보 B의 직업란은 ‘■■■관리단’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투표 결과, 회장 당선인은 B로, 감사 당선인은 C와 D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결정서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5인이 서명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당선인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 비고란에 회장 당선인 B의 직업을 ‘▶▶사업자’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당선인 공고 이후 낙선거 A를 포함한 5인은 회장 당선인 B의 직업을 수정하여 당선 공고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당선자에 대한 당선 취소 및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선인 B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등에 관하여 ○○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과는 후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직업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하여 관리주체에게 해당 내용을 공고하도록 통보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 이후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당선인 B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 **4) 사안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

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중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중략>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중략〉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3. 이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략〉

##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직업을 ‘임대사업자’로 정정하여 당선 공고를 하였으나, 탈락 후보자 등의 이의 제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거쳐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이 당선인의 회장 자격 유지를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자, 신청인은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개입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선인은 직업을 ‘관리단’으로 기재하였으나 과거에도

문제 없이 당선된 전례가 있고, 실제 관리단 제도분과위원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증명된다. 판례상 당선무효는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허위기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갈매 선관위는 규약상 필수인 회의 사전 공고 절차를 생략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은 직업의 의미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직업이란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얻거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한 일시적 활동이나 취미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소득원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활동을 주된 직업으로 기재할 것인지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 선출 당시와 동일하게 직업을 ‘■■■ 관리단’으로 기재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실제로 해당 관리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는바, 이를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거와 회장 선거는 동일한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였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선거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두 선거 절차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행정지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히고, 향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거 업무를 처리하도록 권고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갈등 상황에 놓인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지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내용을 공고하도록 한 조치는 피신청인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행정지도가 민원 제기를 계기로 이루어졌고, 그 이해관계인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고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행정지도의 방식과 범위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위원회 결정**

신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행정지도가 위법·부당하지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견을 표명한다.

## **V. 부록**

## □ 민원 처리 상세 내역

| 연번 | 접수경로  | 민원요지                                                       | 처리결과   |
|----|-------|------------------------------------------------------------|--------|
| 1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무단점유 민원 관련 전화응대 및 공식 답변 괴리 건                           | 사무국 종결 |
| 2  | 국민신문고 | 생계급여 신청에 대해서                                               | 사무국 종결 |
| 3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입증을 위한 민원처리의<br>해당 공무원 소극행정조사 및 조치 요청 | 사무국 종결 |
| 4  | 국민신문고 | SK텔레콤 공사현장 사고및 보험사 사기.                                     | 사무국 종결 |
| 5  | 국민신문고 | 중국산 전기버스 CHTC버스 화학적인 악취 및 승차감 불편 제기                        | 사무국 종결 |
| 6  | 국민신문고 | 면직공무원의 직무무지와허위진술로 시민유죄판결                                   | 사무국 종결 |
| 7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도시계획도로 조성과정에서 사유지 무단 편입여부 및<br>행정처리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사무국 종결 |
| 8  | 국민신문고 | 경기도도청에 신고<br>(경기도청 권익위원회)                                  | 사무국 종결 |
| 9  | 국민신문고 | 경기도 행정기관을 감찰할 수 있는 기관 이관요청                                 | 사무국 종결 |
| 10 | 국민신문고 | 공무원들과 지자체 행정기관들의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민원처리.                          | 사무국 종결 |
| 11 | 국민신문고 | 경기도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 사무국 종결 |
| 12 | 국민신문고 | 소극행정신고                                                     | 사무국 종결 |
| 13 | 국민신문고 | 행안부감사요청                                                    | 사무국 종결 |
| 14 | 국민신문고 | 소극행정신청                                                     | 사무국 종결 |
| 15 | 국민신문고 | 경기도청 권익위원회 000님,구리시청 감사담당관<br>000님,구리시청도로과 000님, 소극행정 신고   | 사무국 종결 |
| 16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보건소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업무 태만                                  | 사무국 종결 |
| 17 | 국민신문고 | 민원이송법을 이용해 민원 회피                                           | 사무국 종결 |
| 18 | 국민신문고 | 소극행정 신고                                                    | 사무국 종결 |
| 19 | 국민신문고 |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관련법규 숙지 및 민원대응 소홀                             | 사무국 종결 |
| 20 | 국민신문고 | 안전사고 위험 민원의 소극적 처리 및 민원 대응 불만족                             | 사무국 종결 |
| 21 | 국민신문고 | 개발제한구역 위반건축물 내 음식점 영업행위 단속요청에 대한<br>미온적 처리결과에 대한 조사요청      | 사무국 종결 |
| 22 | 국민신문고 | 행안부에 주민등록법질의 및 진정                                          | 사무국 종결 |
| 23 | 국민신문고 | 이의제기 민원신청                                                  | 사무국 종결 |
| 24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도로교통과 000 주무관의 부적절·불친절 민원응대에<br>대한 시정 요청              | 사무국 종결 |
| 25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도로교통과 000 주무관의 부적절·불친절 민원응대에<br>대한 시정 요청              | 사무국 종결 |
| 26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복지정책과 000 주무관 막말과 불친절 관련 처분 요청                         | 사무국 종결 |
| 27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000 복지담당자 직무유기 처분요청                                   | 사무국 종결 |
| 28 | 국민신문고 | 구리시 감사관장께 질의                                               | 사무국 종결 |
| 29 | 국민신문고 |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000주무관 칭찬                                    | 사무국 종결 |
| 30 | 국민신문고 | 신고(구리시 안전관리국 000주무관)                                       | 사무국 종결 |
| 31 | 국민신문고 | 공무원의 불친절 민원 응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입장 요구                          | 사무국 종결 |

| 연번 | 접수경로  | 민원요지                                                               | 처리결과   |
|----|-------|--------------------------------------------------------------------|--------|
| 32 | 국민신문고 | 경기도에 질의, 구리시조사관 법령해석 판단요청                                          | 사무국 종결 |
| 33 | 국민신문고 | 교차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 사무국 종결 |
| 34 | 국민신문고 | (경기도 구리시) 건설공사시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관한 지침 준수협조 요청                      | 사무국 종결 |
| 35 | 국민신문고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의 정식민원 제기                                             | 사무국 종결 |
| 36 | 국민신문고 | 행정안전부에 민원                                                          | 사무국 종결 |
| 37 | 국민신문고 | 국토교통부 & 감사원 이의제기                                                   | 사무국 종결 |
| 38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000 복지담당자 직무유기 재조사 요청                                         | 사무국 종결 |
| 39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정보공개 /사실조회회신서/문서제출명령 비공개 처리에 대한 국무총리 비서실 감사요청 | 사무국 종결 |
| 40 |       |                                                                    |        |
| 41 |       |                                                                    |        |
| 42 |       |                                                                    |        |
| 43 |       |                                                                    |        |
| 44 |       |                                                                    |        |
| 45 | 국민신문고 | (비공개)                                                              | 사무국 종결 |
| 46 | 국민신문고 | (비공개)                                                              | 사무국 종결 |
|    | 국민신문고 | 소극행정 자원행정과 신고                                                      | 사무국 종결 |
| 47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정보공개 등                                        | 사무국 종결 |
| 48 |       |                                                                    |        |
| 49 | 국민신문고 | (비공개)                                                              | 사무국 종결 |
| 50 | 국민신문고 | (비공개)                                                              | 사무국 종결 |
| 51 | 국민신문고 | (비공개)                                                              | 사무국 종결 |
| 52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정보공개 등                                        | 사무국 종결 |
| 53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동구동 주민센터 전화 상담 및 복지 지원 업무 불이행 관련 민원 접수                         | 사무국 종결 |
| 54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정보공개 등                                        | 사무국 종결 |
| 55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직무유기, 불친절 징계 요청                          | 사무국 종결 |
| 56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정보공개 등                                        | 사무국 종결 |
| 57 | 국민신문고 | 인창복지문화센터 응대 수준 저하                                                  | 사무국 종결 |
| 58 | 국민신문고 | 존경하는 구리 시장님, 구리 도시 공사 8호선 구리역 직원분들을 칭찬합니다.                         | 사무국 종결 |
| 59 | 국민신문고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및 환경오염 신고에 대하여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고발                   | 사무국 종결 |
| 60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정보공개 등                                        | 사무국 종결 |
| 61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공무원의 소극행정 신고                                                   | 사무국 종결 |
| 62 | 국민신문고 | 행정공무원의 알수없는 답변에 피해를 보고있는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사무국 종결 |
| 63 | 국민신문고 | 구리 000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정보공개 등                                        | 사무국 종결 |
| 64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동구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000 강력한 징계 요청                                   | 사무국 종결 |

| 연번 | 접수경로  | 민원요지                                                                                                    | 처리결과   |
|----|-------|---------------------------------------------------------------------------------------------------------|--------|
| 65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민원봉사와 000 강력한 징계 요청                                                                                | 사무국 종결 |
| 66 | 국민신문고 | 구시 보건소 직원 불친절 고발                                                                                        | 사무국 종결 |
| 67 | 국민신문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소명확인서) 개인정보 불법 무단 외부 유출자 확인 요청 등                                                              | 사무국 종결 |
| 68 | 국민신문고 | 민원 접수에 대한 연락 회피와 이후 이 민원에 대한 2025년 8월 7일에 등록한 불성실한 민원 답변에 재조사를 요청하며 증거자료 제출을 위한 이메일 요청                  | 사무국 종결 |
| 69 | 국민신문고 | 2025년 07월 04일 구리시청 000 복지담당자 직무유기 처분 요청                                                                 | 사무국 종결 |
| 70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민원봉사와 000 강력한 징계 요청 건                                                                              | 사무국 종결 |
| 71 |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 사무국 종결 |
| 72 | 국민신문고 | 건축물대장 표기 누락으로 인한 건축과 민원신고                                                                               | 사무국 종결 |
| 73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이름 모름, 여자 직원)의 징계 요청                                                                        | 사무국 종결 |
| 74 | 국민신문고 | 불성실한 민원 답변에 다른 담당자가 조사 요청                                                                               | 사무국 종결 |
| 75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복지정책과 000 담당자의 직무 유기 행위 민원 접수 관련 구리시 감사부서 000 조사 담당관의 민원 허위 처리로 인한 민원 배정 기피 신청 및 다른 담당자 재배정 요청 외 1건 | 사무국 종결 |
| 76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청구                                                                                                  | 사무국 종결 |
| 77 | 국민신문고 | 민원개요 및 이해충돌 상황에 따른 소극행정 행정조치                                                                            | 사무국 종결 |
| 78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입증자료 추가                                                                                         | 사무국 종결 |
| 79 | 국민신문고 | 민원개요 이해충돌 상황에 따른 소극행정 행정조치                                                                              | 사무국 종결 |
| 80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입증자료 추가                                                                                         | 사무국 종결 |
| 81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82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83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84 | 국민신문고 | 민원개요 이해충돌 상황에 따른 소극행정 행정조치                                                                              | 사무국 종결 |
| 85 | 국민신문고 | 기존 민원 입증자료 추가                                                                                           | 사무국 종결 |
| 86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87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88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89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0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1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2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3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4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5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6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7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98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연번  | 접수경로  | 민원요지                                                   | 처리결과   |
|-----|-------|--------------------------------------------------------|--------|
| 135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36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37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38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39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40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41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42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43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44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45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46 | 국민신문고 | 구리ooo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입증을 위한 민원처리<br>해당공무원 소극행정조사 및 조치요청 | 사무국 종결 |
| 147 | 국민신문고 | 구리ooo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입증을 위한 민원처리<br>해당공무원 소극행정조사 및 조치요청 | 사무국 종결 |
| 148 | 국민신문고 | 구리ooo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위반 입증을 위한 민원처리<br>해당공무원 소극행정조사 및 조치요청 | 사무국 종결 |
| 149 | 국민신문고 | 진정서 제출                                                 | 사무국 종결 |
| 150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1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2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3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4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5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6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7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8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59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0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1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2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3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4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5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6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7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8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69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연번  | 접수경로  | 민원요지                                                                | 처리결과   |
|-----|-------|---------------------------------------------------------------------|--------|
| 170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1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2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3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이름 모름, 여자 직원)의 징계 건                                     | 사무국 종결 |
| 174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5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6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7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8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79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80 | 국민신문고 | 민원 담당자 재배정 처리 요청                                                    | 사무국 종결 |
| 181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민원봉사과 000의 강력한 징계 요청 건                                         | 사무국 종결 |
| 182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000 복지담당자 직무유기 재조사 요청 건                                        | 사무국 종결 |
| 183 | 국민신문고 | 정보공개청구 신청                                                           | 사무국 종결 |
| 184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85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86 | 국민신문고 | 기존 신청민원 후속민원                                                        | 사무국 종결 |
| 187 | 국민신문고 | 구리시 복지정책과 000 주무관 막말과 불친절 직무유기 건                                    | 사무국 종결 |
| 188 | 국민신문고 | 민원 접수에대한 연락 회피와 이후 이 민원에 대한 2025년 8월 7일에 등록한 불성실한 민원 허위답변에 재조사를 요청  | 사무국 종결 |
| 189 | 국민신문고 | 민원 담당자 재배정 처리 요청                                                    | 사무국 종결 |
| 190 | 국민신문고 |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처리에 대해 시정 요청<br>(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          | 사무국 종결 |
| 191 | 국민신문고 | 공무원의 직무유기및 업무방해                                                     | 사무국 종결 |
| 192 | 국민신문고 | 구리시 균형개발과 000 의 직무유기및 업무방해                                          | 사무국 종결 |
| 193 | 국민신문고 | 경기도 구리시청 감사담당관에서(000 제외)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이름 모름, 여자 직원)의 징계 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 | 사무국 종결 |
| 194 | 국민신문고 | 민원에 대한 연락회피와 불성실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여 재조사를 요청하며, 증거자료 제출을 위한 이메일 요청 외 1건   | 사무국 종결 |
| 195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000팀장 조사요청                                               | 사무국 종결 |
| 196 | 국민신문고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감경 및 포상금 지급 관련 감사실의 감사 요청                      | 사무국 종결 |
| 197 | 국민신문고 |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협조 요청서                               | 사무국 종결 |
| 198 | 국민신문고 | 위생안전과 주무관의 복합 민원(불법 유통 및 불법 증축)에 대한 조사 미흡                           | 사무국 종결 |
| 199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반려동물 관련 기간제 인력운영 및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부정·부패 감사 요청                     | 사무국 종결 |
| 200 | 국민신문고 | 민원취지와 상반된 처리에 대한 소극행정 판단요청                                          | 사무국 종결 |
| 201 | 국민신문고 | 소극행정처리 민원 요청                                                        | 사무국 종결 |

| 연번  | 접수경로  | 민원요지                                                    | 처리결과   |
|-----|-------|---------------------------------------------------------|--------|
| 202 | 국민신문고 | ooo상호 불법확장 구역 사용 관련 재확인 요청                              | 사무국 종결 |
| 203 | 국민신문고 | ooo단체 구리시지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회계 집행의 불투명성, 기부금·회비 관리 부적정, | 사무국 종결 |
| 204 | 국민신문고 | 구리시 조례 해석 질의                                            | 사무국 종결 |
| 205 | 국민신문고 | 불법증축 공간에서 영업 중인데도 한 달 넘게 봐주기식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사무국 종결 |
| 206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민원 처리의 내용 오인·왜곡 및 형식적 종결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사무국 종결 |
| 207 | 국민신문고 | 구리시청 공동주택 민원 처리의 오인·부실 처리에 대한 재검토 및 행정지도 요청             | 사무국 종결 |

#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시에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6조(임기)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 시장은 새로운 위원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이 2명일 경우에는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추천위원회의 구성)

-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1. 인사업무 담당국장
  -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 3. 변호사 및 대학교수
  - 4.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추천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1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 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 추천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2회 공개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천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 ④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부터 제53조, 제77조부터 제81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14조(재심의)

- ① 시장은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사안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부터 제53조, 제77조부터 제81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15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한다.

부 칙 <조례 제2257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